:: 현장접수처 현황 (※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 가능)

지 역	장 소	소 재 지	접수시간
중 구	대구콘서트하우스(2층 뮤직카페)	중구 태평로 141	평일 09:00~17:30
동 구	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(1층 회의실)	동구 동촌로 42길 69	
서 구	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(2층 교육장)	서구 국채보상로 124	
북 구	청년ICT창업성장센터(1층 회의실)	북구 구암로 51	
	대구지식산업센터(1층 102호,104호)	북구 오봉로 164(제3산업단지내)	
수성구	대구어린이회관(1층 꿈누리관)	수성구 동대구로 176	
달서구	두류수영장(야외동 2층)	달서구 공원순환로 237	
	대구융합R&D센터(2층 회의실1)	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	
달성군	농협하나로 달성유통센터(2층 대강당)	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9	



:: 기타 문의처

··· 대구상공회의소(무급휴직근로자 지원) ☎ 053-222-3090
··· 대구경영자총협회(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지원) ☎ 053-555-5050
···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☎ 053-803-3702

#힘내요 DAEGU

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

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지원안내

대구시에서는 「코로나19」로 피해를 입은
지역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의
일자리 안정 등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
가급적 전자메일 또는 등기우편 신청을 부탁드리며,
지급여부와 수령금액은
신청서류 접수(마감) 후 검증 및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공고문 참고

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

무급휴직근로자 지원

코로나19로 인해 **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**에서
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 [고용보험 가입자]

- **사업장 요건 :** 신청일 현재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*으로,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「심각 ('20.2.23.)」단계 이후 영업일(근무일)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
  *** 근로자수 산정기준 :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(1개월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**
- **근로자 요건 :** '20.2.23.이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중 2.23.~3.31. 기간중 영업일(근무일) 5일 이상 무급휴직자

지원제외 대상

- 기초생활수급자,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, 구직급여(실업급여) 수급자, 유급휴업수당 수급자
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(유급휴가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 수급자)
- 단란주점업,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
- 사업주 본인·부모·배우자·자녀

신청기간 4. 13.(월) ~ 4. 29.(수)

※ 토·일요일, 4.15. 선거일은 방문 접수 불가 (전자메일 신청은 가능)

신 청 인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

※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주가 일괄신청, 사업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개별신청 가능

신청방법 전자메일, 등기우편, 현장접수 중 선택

- **전자메일 :** nopay@dcci.or.kr **※ 4.29.(수) 18:00까지 접수분**
- **우편접수 :** 대구상공회의소 (우 41260, 대구 동구 동대구로 457, 4층 401호) **※ 4.29.(수) 18:00까지 도착분**
- **현장접수 :** 두류수영장 등 9곳 접수 창구 (뒷면 현장접수처 참조)
  ※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 가능(평일 09:00~17:30), 현장방문 신청 시 대중교통 이용 권장

제출서류 ※ 작성서식은 대구시청 또는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

- **사업주 신청 :** ①신청서 ②무급휴직확인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근로자명의 통장사본 ⑤주민등록등본(근로자) ⑥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⑦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- **근로자 신청 :** ①신청서 ②무급휴직 사업주 확인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근로자명의 통장사본 ⑤주민등록등본(근로자) ⑥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⑦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
지원내용

- **지원금액 : 일 2.5만원(월 최대 50만원) 지급하되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***
  *** 소정근로시간 : 8시간(일 2.5만원, 월 최대 50만원), 6시간(일 1.875만원, 월 최대 37.5만원), 4시간(일 1.25만원, 월 최대 25만원), 2시간(일 0.625만원, 월 최대 12.5만원)**
  ※ 예산대비 신청이 많을 경우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
  ※ 예산 미소진 시, 2차분(지원대상기간:'20.4.1.~4.30.)은 '20. 5. 4.경 공고예정
- **지원 대상기간 :** '20. 2. 23.부터 3. 31까지
- **지급방법 : '20.5.11.경 해당 근로자 계좌로 입금 ※ 문자메시지로 지급여부 사전 안내**
- **지원절차 :** 신청(사업주 또는 근로자) → 요건확인, 검증·심사 → 결정 및 지급

문 의 처 대구상공회의소 (☎ 053-222-3090, 홈페이지 www.dcci.or.kr)

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지원

코로나19로 인해 **하시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(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등)**
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에 대해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[고용보험 미가입자]

- '20.3.30.기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'20.2.23.이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, 위촉서류, 소득금액 증명서류 등 객관적 확인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*로 확인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*** 학습지 방문교사, 강사, 방문판매원, 문화예술인, 여행관광서비스종사원, 대리운전원, 보험설계사, 청소년상담사 등**
  ①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코로나19 위기경보수준「심각」단계('20.2.23.)이후부터 3.31.까지 기간중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
 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, 소득기준 월('19.11월, 12월, '20.1월 중 한달) 대비 '20.3월 소득이 25% 이상 감소한 자
-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 특별지원사업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
  (단,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)
  ※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는 「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생존자금(사업체당 100만원) 지원사업」을 신청하시기 바람

지원제외 대상

- 기초생활수급자,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, 구직급여(실업급여) 수급자, 고용보험가입자
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(유급휴가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 수급자)
-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수급자, 사업주 본인·부모·배우자·자녀
- 단란주점업,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

신청기간 4. 13.(월) ~ 4. 29.(수)

※ 토·일요일, 4.15. 선거일은 방문 접수 불가 (전자메일 신청은 가능)

신 청 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

신청방법 전자메일, 등기우편, 현장접수 중 선택

- **전자메일 :** dgef@dgef.kr **※ 4.29.(수) 18:00까지 접수분**
- **우편접수 :** 대구경영자총협회 (우 41824, 대구 서구 서대구로 128, 대구경총회관 4층) **※ 4.29.(수) 18:00까지 도착분**
- **현장접수 :** 두류수영장 등 9곳 접수 창구 (뒷면 현장접수처 참조)
  ※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 가능(평일 09:00~17:30), 현장방문 신청 시 대중교통 이용 권장

제출서류 ※ 작성서식은 대구시청 또는 대구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

- **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:** ①신청서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입증서류 ③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④주민등록등본 ⑤종사자 명의 통장사본 ⑥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- **소득이 25%이상 감소한 경우 :** ①신청서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입증서류 ③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주민등록등본 ⑤종사자 명의 통장사본 ⑥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
지원내용

- **지원금액 : ① 【5일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】 일 2.5만원 (월 최대 50만원)**
  ② 【소득이 25%이상 감소한 경우】 소득 감소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
  ※ 예산대비 신청이 많을 경우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
  ※ 예산 미소진 시, 2차분(지원대상기간:'20.4.1.~4.30.)은 '20. 5. 4.경 공고예정
- **지원 대상기간 :** '20. 2. 23.부터 3. 31까지
- **지급방법 : '20.5.11.경 해당 종사자 계좌로 입금 ※ 문자메시지로 지급여부 사전 안내**
- **지원절차 :** 신청(종사자) → 요건확인, 검증·심사 → 결정 및 지급

문 의 처 대구경영자총협회 (☎ 053-555-5050, 홈페이지 www.dgef.or.kr)